

1. 개정이유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규정, 국적이탈 허가신청시 수수료 부과근거 마련 등 개정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허가 신청 관련 권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규정(안 제12조의2호)

- 법 제14조의2 제5항, 영 제18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 규정

나.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수수료 부과근거 마련(안 제18조)

- 국적법 제24조에 따른 국적법상 허가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신청인이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허가신청을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본문 중 “영 제18조의2제1항”을 “영 제18조의3제1항”으로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 제8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3를 제12조의4로 하고, 본문 중 “영 제18조의3제2항”을 “영 제18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제12조의5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영 제18조의4제2항”을 “영 제18조의5제2항”으로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 제8호의4서식”으로, 같은 조의 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을 “영 제18조의5제3항”으로 “별지 제8호의4서식”을 “별지 제8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적이탈허가 신청(1인당) : 10만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청 대상

-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이주국가	기간	이주목적	동반이주 가족
	~		
	~		
	~		
	~		

2. 학력, 경력, 병역사항

대한민국 교육과정	[] 국내 초·중·고·대학·대학원 입학 또는 전학, 재학기간, 중퇴 또는 졸업 여부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재학기간: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재학기간: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재학기간: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해외 교육과정 ※ 본국 및 제3국의 교육사항을 모두 기재합니 다.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경력 ※ 본국 및 제3국의 경력사항을 모두 기재합니 다.	기관 및 업체명	기간	직책(직급)	상벌관계(일자)
병역사항	[] 병역복무를 마침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해당 사항 없음			
	[] 신체검사 실시(검시일시:) [] 신체검사 미실시			

3. 만 18세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

해당사유 ※ 해당하는 경우 에 체크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 사실을 알지 못함
	[]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대한민국 법을 알지 못했음
	[]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경과 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할 사유 발생
	[] 기타 사유 ()

* 위 내용 관련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

4. 국내 체류기간·목적

※ 신청인의 국내 체류기간, 체류목적을 모두 기재합니다.

국내거주 기간	총 년 월	
	기간	국내거주 사유
	~	
	~	
	~	
	~	
	~	
	~	
	~	
	~	

※ 신청인 부의 국내 체류기간, 체류목적을 모두 기재합니다.

국내거주 기간	총 년 월	
	기간	국내거주 사유
	~	
	~	
	~	
	~	
	~	
	~	
	~	
	~	

※ 신청인 모의 국내 체류기간, 체류목적을 모두 기재합니다.

국내거주 기간	총 년 월	
	기간	국내거주 사유
	~	
	~	
	~	
	~	
	~	
	~	
	~	
	~	

※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체류목적을 모두 기재합니다.

국내거주 기간	신청인과의 관계:		
	총 년 월		
	기간	국내거주 사유	
	~		
	~		
	~		
	~		
	~		
	~		
	~		

※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체류목적을 모두 기재합니다.

국내거주 기간	신청인과의 관계:		
	총 년 월		
	기간	국내거주 사유	
	~		
	~		
	~		
	~		
	~		
	~		
	~		

※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체류목적을 모두 기재합니다.

국내거주 기간	신청인과의 관계:		
	총 년 월		
	기간	국내거주 사유	
	~		
	~		
	~		
	~		
	~		
	~		
	~		

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 신청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내역을 모두 기재합니다.

권리행사 사항	구분	기간	금액 또는 내용
	의무교육 유[] 무[]		
	건강보험 유[] 무[]		
	사회보험 유[] 무[]		
	기초연금 유[] 무[]		
	정당가입 유[] 무[]		
	공직취업 유[] 무[]		
	기타 유[] 무[]		

6. 복수국적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상당한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구분	직업 관련	[] 외국 공직 취업 제한	증빙자료: 유[] 무[]
		[] 외국 군 입대 제한	증빙자료: 유[] 무[]
		[] 외국 국가안보 취업 제한	증빙자료: 유[] 무[]
		[] 기타 ()	증빙자료: 유[] 무[]
	업무 관련	[] 외국 공직 업무 제한	증빙자료: 유[] 무[]
		[] 외국 군 보직 제한	증빙자료: 유[] 무[]
		[] 외국 국가안보 업무 제한	증빙자료: 유[] 무[]
		[] 기타 ()	증빙자료: 유[] 무[]
	기타	[] 복수국적 보유시 외국국적 취득 불가 등	증빙자료: 유[] 무[]
		[] 기타 ()	증빙자료: 유[] 무[]

* 위 내용 관련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

7. 출생 이후 현재까지 성장 환경, 학업, 직업, 국적이탈신청 사유

성장 환경	
학업사항	
직업사항	
국적이탈을 하여야만 하는 사유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주장 사실에 대해서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신청인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① 신청 대상

- ▶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에 규정된 신청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학력, 경력, 병역사항

- ▶ 신청인의 학력, 경력, 병역사항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해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③ 만 18세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 ▶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해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④ 국내 체류기간·목적

- ▶ 신청인, 신청인 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대한민국 체류기간과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던 목적 및 이유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사항

- ▶ 대한민국에서의 권리 행사 사항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⑥ 복수국적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상당한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해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⑦ 출생 이후 현재까지 성장 환경, 학업, 직업, 국적이탈신청 사유

- ▶ 출생 이후 국내외 거주시기 및 부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의 동거여부, 학업, 직업, 국적이탈신청 사유 등을 성장 시기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3. 국적이탈허가 신청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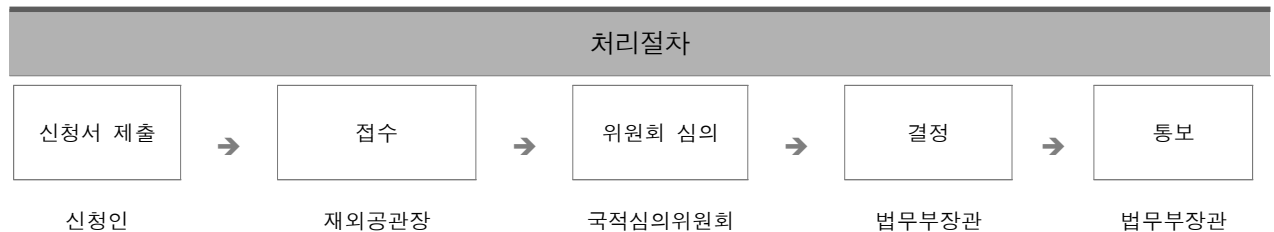
- ▶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에서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나 주소, e-메일 등이 바뀌면 접수한 재외공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국적이탈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심사는 종결되며, 신원조사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국적이탈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국적이탈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허가 또는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본인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위 내용을 이 박스 안에 직접 자필로 쓰세요.

신청인 Applicant's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하려는 남자는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신청인이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1인당 10만원
-------------	---	--------------------



※국적법 시행령 제28조의3(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국적이탈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국적이탈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다.</u> <u>② 제1항의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u> <u>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u>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u> <u>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장관이 정하는 서류</u> <u>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u>		

	<u>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u> <u>6.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u>7. 기타 신청인이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u> <u>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허가신청을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u>제12조의2(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u> 영 <u>제18조의2제1항</u>에 따른	<u>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u> 영 <u>제18조의3제1항</u>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u>제8호의2서식</u>에 따른다. <u>제12조의3</u>(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u>제18조의3제2항</u>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6. (생략) <u>제12조의4</u>(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u>제18조의4제2항</u>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u>제8호의3서식</u>에 따른다. ② 영 <u>제18조의4제3항</u>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u>제8호의4서식</u>에 따른다. ③ (생략) <u>제18조</u>(수수료)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 설></u> 6. ~ 9. (생략)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u>제8호의3서식</u>에 따른다. <u>제12조의4</u>(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u>제18조의4제2항</u>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6.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5</u>(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u>제18조의5제2항</u>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u>제8호의4서식</u>에 따른다. ② 영 <u>제18조의5제3항</u>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u>제8호의5서식</u>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u>제18조</u>(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국적이탈허가 신청(1인당) : 10만원</u> 7. ~ 10. (6. ~ 9. 현행과 같음)
---	--